

#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

Facility/Technical/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 
Cylinder Cabinets for High-pressure Gases

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·의결 : 2009년 4월 30일

지식경제부 승인 : 2009년 5월 15일



**가 스 기 술 기 준 위 원 회**

**위 원 장** 윤 기 봉 : 중앙대학교 교수

**부위원장** 김 광 섭 : 한진도시가스(주) 상무

**당 연 직**  
 김 무 흥 :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장  
 범 희 권 :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장  
 김 재 용 :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안전이사

**고압가스분야**  
 김 연 종 : United Pacific PLG. 대표이사  
 김 진 석 :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부장  
 김 청 균 : 홍익대학교 교수  
 박 반 옥 :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 
 백 종 배 : 충주대학교 교수  
 윤 기 봉 : 중앙대학교 교수  
 최 문 규 :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부사장

**액화석유가스분야**  
 고 봉 식 : 대성셀텍(주) 대표이사  
 권 순 영 : LP가스공업협회 전무  
 안 병 성 :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
 윤 재 건 : 한성대학교 교수  
 장 석 응 : 에스이피엔씨(주) 회장  
 황 정 호 : 연세대학교 교수

**도시가스분야**  
 김 광 섭 : 한진도시가스(주) 상무  
 오 신 규 : 한국가스공사 수석연구원  
 이 수 경 :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 
 정 충 기 : 서울대학교 교수

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2조의2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7조의2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7조의3에 따라 가스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으로,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



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일반사항 .....           | 1  |
| 1.1 적용범위 .....          | 1  |
| 1.2 기준의 효력 .....        | 1  |
| 1.3 다른 기준의 인정 .....     | 1  |
| 1.3.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 ..... | 1  |
| 1.4 용어 정의 .....         | 2  |
| 2. 제조시설기준 .....         | 2  |
| 2.1 제조설비 .....          | 2  |
| 2.2 검사설비 .....          | 2  |
| 3. 제조기술기준 .....         | 3  |
| 3.1 설계(내용 없음) .....     | 3  |
| 3.2 재료 .....            | 3  |
| 3.2.2 재료의 사용제한 .....    | 5  |
| 3.3 두께(내용 없음) .....     | 8  |
| 3.4 구조 및 치수 .....       | 8  |
| 3.4.1 구조 .....          | 8  |
| 3.4.2 치수(내용 없음) .....   | 9  |
| 3.5 가공 .....            | 9  |
| 3.6 용접 .....            | 9  |
| 3.7 열처리(내용 없음) .....    | 9  |
| 3.8 성능 .....            | 10 |
| 3.8.1 제품성능 .....        | 10 |
| 3.8.2 재료성능(내용 없음) ..... | 10 |
| 3.8.3 작동성능(내용 없음) ..... | 10 |
| 3.9 표시 .....            | 10 |
| 3.9.1 제품표시 .....        | 10 |
| 3.9.2 합격표시 .....        | 10 |
| 4. 검사기준 .....           | 11 |
| 4.1 검사종류 .....          | 11 |
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4.1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    | 11 |
| 4.1.2 제품에 대한 검사       | 11 |
| 4.2 공정검사 대상 심사(내용 없음) | 11 |
| 4.3 검사항목              | 11 |
| 4.3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    | 11 |
| 4.3.2 제품에 대한 검사       | 11 |
| 4.4 검사방법              | 12 |
| 4.4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    | 12 |
| 4.4.2 제품에 대한 검사       | 12 |
| 4.5 그 밖의 검사기준         | 13 |
| 4.5.1 수입품 검사(내용 없음)   | 13 |
| 4.5.2 검사일부 생략(내용 없음)  | 13 |
| 4.5.3 불합격 제품 파기방법     | 13 |

**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**  
(Facility/Technical/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Cylinder Cabinets for High-pressure Gases)

## 1. 일반사항

### 1.1 적용범위

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(이하 “실린더캐비닛”이라 한다)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 1.2 기준의 효력

**1.2.1** 이 기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·의결(안전번호 제2009-3호, 2009년 4월 30일)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(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-193호, 2009년 5월 15일)을 받은 것으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
**1.2.2**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별표 12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### 1.3 다른 기준의 인정

#### 1.3.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

**1.3.1.1** 규칙 별표12 제4호나목에 따라 실린더캐비닛이 이 기준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나,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실린더캐비닛으로서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실린더캐비닛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실린더캐비닛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**1.3.1.2** 실린더캐비닛이 표 1.3.1.2에 따른 인정규격에 따라 해당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1.3.1.1에 따른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검사특례 신청·심사 없이 당해 인정규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표 1.3.1.2 외국 실린더캐비닛의 인정규격 및 공인검사기관

|      |        |
|------|--------|
| 인정규격 | 공인검사기관 |
|------|--------|
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ASME              | NBBI인증검사원(AI : Authorized Inspector) |
| BS, HSE           | HSE 또는 HSE인증기관                       |
| DIN, AD-Merkblatt | TU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NF, CODAP         | APAVE, BV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JIS, 고압가스보안법      |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·보안원, 고압가스보안협회            |
|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규격  |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                  |

## 1.4 용어 정의

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**1.4.1** “실린더캐비닛” 이란 용기를 장착하여 특정고압가스 등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관과 안전장치 등이 일체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.

## 2. 제조시설기준

### 2.1 제조설비

실린더캐비닛을 제조하려는 자가 이 시설기준에 따라 실린더캐비닛을 제조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제조설비(제조하는 실린더캐비닛에 필요한 것만을 말한다)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- (1) 가공설비
- (2) 용접설비
- (3) 조립설비
- (4) 세척설비
- (5) 그 밖에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

### 2.2 검사설비

실린더캐비닛을 제조하려는 자가 이 검사기준에 따라 실린더캐비닛을 검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(검사하는 실린더캐비닛에 필요한 것만을 말한다)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09.5.15>

- (1) 초음파두께측정기·나사게이지·버니어캘리퍼스 등 두께측정기
- (2) 내압시험설비
- (3) 기밀시험설비
- (4) 표준이 되는 압력계
- (5) 표준이 되는 온도계
- (6) 마크로시험설비

(7) 그 밖에 실린더캐비닛 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

### 3. 제조기술기준

#### 3.1 설계(내용 없음)

#### 3.2 재료

실린더캐비닛의 재료는 그 실린더캐비닛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**3.2.1 실린더캐비닛을 구성하는 배관계(튜브와 피팅류) 및 입력계·유량계 등의 기기류(이하 “기기류” 라 한다)에 사용하는 재료는 그 실린더캐비닛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·압력·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으로 하되, 배관계의 재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.**

##### 3.2.1.1 배관계의 재료

압력을 받는 배관계(이하 “내압부분” 이라 한다)의 재료는 가스의 종류·압력·온도 및 사용환경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규격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.

##### 3.2.1.1.1 관재료

- (1) KS D 3562(압력배관용 탄소강관)
- (2) KS D 3563(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관)
- (3) KS D 3564(고압배관용 탄소강관)
- (4) KS D 3570(고온배관용 탄소강관)
- (5) KS D 3573(배관용 합금강 강관)
- (6) KS D 3576(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)
- (7) KS D 3572(보일러 열교환용 합금강관)
- (8) KS D 3577(보일러 열교환용 스테인리스 강관)
- (9) KS D 3569(저온 배관용 강관)
- (10) KS D 3758(배관용 이음매 없는 니켈·크롬·철합금관)
- (11) KS D 5301(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의 규격 중 무산소동·타프피치 동·인탈산동·단동·황동·규소청동)
- (12) KS D 5539(이음매 없는 니켈 동합금관)
- (13) KS D 6761(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)
- (14) KS D 5574(배관용 티탄관)
- (15) KS 허가제품인 폴리에틸렌 피복강관

##### 3.2.1.1.2 형·판·대재

- (1) KS D 3503(일반구조용 압연강재)(1)
- (2) KS D 3560(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)
- (3) KS D 3515(용접구조용 압연강재)(1)(2)
- (4) KS D 3521(압력용기용 강판)
- (5) KS D 3540(중·상온압력용기용 탄소강판)
- (6) KS D 3538(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망간·몰리브덴강 및 망간·몰리브덴·니켈합금강 강판)
- (7) KS D 3541(저온 압력용기용 탄소강 강판)
- (8) KS D 3752(기계구조용 탄소강재)
- (9) KS D 3708(니켈 크롬강 강재)
- (10) KS D 3709(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재)
- (11) KS D 3707(크롬 강재)
- (12) KS D 3711(크롬 몰리브덴강 강재)
- (13) KS D 3724(기계구조용 망간강 강재 및 망간크롬강 강재)
- (14) KS D 3543(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크롬 몰리브덴강 강판)
- (15) KS D 3705(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)
- (16) KS D 3698(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)
- (17) KS D 3699(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대)
- (18) KS D 3700(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대)
- (19) KS D 3732(내열강판)
- (20) KS D 3532(내식내열 초합금판)
- (21) KS D 5201(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의 규격 중 무산소동·타프피치동·인탈산동·네이벌황동·알루미늄청동·백동)
- (22) KS D 5546(니켈동 합금판)
- (23) KS D 6701(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)
- (24) KS D 6759(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압출형재)
- (25) KS D 6000(티탄판 및 조)

### 3.2.1.1.3 단조품

- (1) KS D 3710(탄소강 단강품)
- (2) KS D 4125(저온압력용기용 단강품)
- (3) KS D 4115(압력용기용 스테인리스강 단강품)
- (4) KS D 6770(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단조품)

### 3.2.1.1.4 주조품

- (1) KS D 4101(탄소주강품)
- (2) KS D 4106(용접구조용 주강품)
- (3) KS D 4103(스테인리스 주강품)
- (4) KS D 4107(고온고압용 주강품)
- (5) KS D 4111(저온고압용 주강품)
- (6) KS D 4302(구상흑연 주철품)(3),(4)
- (7) KS D 4303(흑심가단 주철품)(3),(4)

- (8) KS D 4305(백심가단 주철품)(3)
- (9) KS D 4304(퍼얼라이트 가단주철품)(3)
- (10) KS D 6733부속서 5.A(덕타일 철주조품)(5)
- (11) KS D 6733부속서 5.B(말리어블 철주조품)(5)
- (12) KS D 6002(청동주물)
- (13) KS D 6008(알루미늄 합금주물)

### 3.2.1.1.5 봉재료

- (1) KS D 3503(일반구조용 압연강재)
- (2) KS D 3526(마봉강용 일반강재)
- (3) KS D 3592(냉간압조용 탄소강 선재)
- (4) KS D 3752(기계구조용 탄소강재)
- (5) KS D 3706(스테인리스 강봉)
- (6) KS D 3731(내열강봉)
- (7) KS D 3531(내식내열 초합금봉)
- (8) KS D 5101(동 및 동합금봉의 규격 중 무산소동, 타프피치동, 인탈산동, 황동, 쾌삭황동, 단조용황동, 네이벌황동)
- (9) KS D 6763(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봉 및 선)
- (10) KS D 5604(티탄봉)

※ 참고

- (1) 3.2.2.5.1의 사용제한에 따른다.
- (2) 3.2.2.5.2의 사용제한에 따른다.
- (3) 3.2.2.6.1의 사용제한에 따른다.
- (4) 3.2.2.6.2의 사용제한에 따른다.
- (5) 3.2.2.6.3의 사용제한에 따른다.

**3.2.1.1.6** 3.2.1.1.1부터 3.2.1.1.5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소가 포함된 고압가스를 내용물로 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고온의 운전조건에서 수소침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료를 선택할 때에는 미국석유협회(American Petroleum Institute, API) Recommended Practice 941의 규정을 따른다.

### 3.2.2 재료의 사용제한

규격의 재료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KS B 6733(압력용기의 기반규격) 중 표 1.1-2.2에 표시된 허용응력 값에 대응하는 온도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 또한 동등 이상의 재료는 설계온도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충격시험을 실시하여 불합격한 것은 0℃ 미만에서 사용되는 배관계의 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**3.2.2.1** 충격시험에 사용하는 시험편은 그 시험편의 양쪽 끝으로부터 용접선에 수직으로 폭 부분을 50 mm 잘라낸 나머지 부분의 열영향부와 용착금속부에서 채취한 것으로 한다.

**3.2.2.2** 충격시험에 사용하는 시험편의 형상과 치수는 KS B 0809(금속재료 충격시험편)의 4호 시험편에 따른다. 다만, 시험편의 치수에 따라 시험편 두께를 10 mm 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험편 두께를 7.5

mm, 5 mm 또는 2.5 mm 가운데 그 시험편의 치수에 따라 가장 큰 것으로 한다.

**3.2.2.3** 충격시험은 모든 시험편에 대하여 모재의 설계온도 이하에서 KS B 0810(금속재료 충격시험방법)의 샤르피 충격시험에 따라 실시하고, 모든 시험편의 흡수에너지가 표 3.2.2.3①에 따른 그 모재의 최소인장강도에 대응한 최소흡수에너지값(3.2.2.2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시험편 두께에 따라 표 3.2.2.3②에 따른 시험편 두께에 대응한 값을 표 3.2.2.3①의 값으로 대체한 값) 이상일 때에 이를 합격으로 한다.

표 3.2.2.3① 최소인장강도에 따른 최소흡수에너지

| 재료의 최소인장강도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소흡수에너지(단위 : J)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개의 평균치         | 1개의 최소치 |
| $\delta$ (단위 : N/mm <sup>2</sup> )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$\delta \leq 450$                  | 18              | 14      |
| $450 < \delta \leq 520$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| 16      |
| $520 < \delta \leq 660$            | 27              | 20      |
| $660 < \delta$                     | 27              | 27      |

표 3.2.2.3② 시험편 두께에 따른 최소흡수에너지

| 시험편의 두께(단위 : mm)    | 10 | 7.5 | 5  | 2.5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|-----|
| 최소흡수에너지<br>(단위 : J) | 27 | 20  | 14 | 7   |
|                     | 20 | 15  | 10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18 | 14  | 9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16 | 12  | 8  | 4   |
|                     | 14 | 11  | 7  | 4   |

#### 3.2.2.4 사용하지서는 안 되는 재료

다음의 재료는 내압부분의 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- (1) 탄소 함유량이 0.35 % 이상의 탄소강재 및 저합금강 강재로서 용접구조에 사용되는 재료. 이 경우 KS D 3710(탄소강 단강품)과 같이 탄소함유량의 규정이 없는 재료는 탄소함유량을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.
- (2) KS D 3507(배관용 탄소강관)
- (3) KS D 3583(배관용 아이크 용접 탄소강관)
- (4) KS D 4301(회주철품)

#### 3.2.2.5 탄소강 강재의 사용제한

**3.2.2.5.1** KS D 3503(일반구조용 압연강재)와 KS D 3515(용접구조용 압연강재)의 1종 A, 2종 A 및 3종 A는 다음에 기재하는 것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- (1) 독성가스를 수송하는 배관계
- (2) 설계압력이 1.6 MPa를 초과하는 내압부분
- (3) 설계압력이 1 MPa를 초과하는 길이 이음매를 가지는 관이나 관이음
- (4) 두께가 16 mm를 초과하는 내압부분

**3.2.2.5.2** KS D 3515(용접구조용 압연강재)[1종 A, 2종 A, 3종 A를 제외한다]는 설계압력이 3 MPa를 초과하는 배관계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### 3.2.2.6 주철품의 사용제한

**3.2.2.6.1** KS D 4302(구상흑연 주철품)의 3종, 4종 및 5종 KS D 4303(흑심가단 주철품)의 1종과 2종 KS D 4305(백심가단 주철품)과 KS D 4304(퍼얼라이트 가단주철품)는 다음에 기재하는 것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- (1) 독성가스를 수송하는 배관계
- (2) 설계압력이 0.2 MPa 이상인 가연성가스의 배관계
- (3) 설계압력이 1.6 MPa를 초과하는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외의 가스밸브와 플랜지
- (4) 설계온도가 0 °C 미만이나 250 °C를 초과하는 배관계

**3.2.2.6.2** KS D 4302(구상흑연 주철품)의 1종, 2종 및 KS D 4303(흑심가단 주철품)의 3종과 4종은 다음에 기재하는 것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- (1) 독성가스를 수송하는 배관계
- (2) 설계압력이 1.6 MPa를 초과하는 밸브와 플랜지
- (3) 설계압력이 0.1 MPa를 초과하는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수송하는 내압부분으로 밸브 및 플랜지 이외의 것
- (4) 설계온도가 0 °C 미만이나 250 °C를 초과하는 배관계

**3.2.2.6.3** KS B 6733부속서 5.A(덕타일 철주조품) 및 5.B(말리어블 철주조품)는 다음에 기재하는 것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- (1) 독성가스(포스젠과 시안화수소에만 적용한다)를 수송하는 배관계
- (2) 설계압력이 2.4 MPa를 초과하는 밸브와 플랜지
- (3) 설계온도가 -5 °C 미만이나 350 °C를 초과하는 배관계

### 3.2.2.7 동·동합금 및 니켈동합금의 사용제한

**3.2.2.7.1** 동·동합금 및 니켈동합금은 KS B 6733(압력용기의 기반기역) 중 표 1.3에 표시된 허용인장응력 치에 대응하는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 다만, 압력계·액면계 연결관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.

**3.2.2.7.2** 동 및 동합금량이 62%를 초과하는 합금은 내부 유체에 아세틸렌이 함유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### 3.2.2.8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사용제한

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은 KS B 6733(압력용기의 기반기역) 중 표 1.3에 표시된 허용인장응력치에 대응하는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 다만, 압력계·액면계 연결관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.

**3.2.2.9 티탄의 사용제한**

티탄은 KS B 6733(압력용기의 기판규격)중 표 1.3에 표시된 허용인장응력치에 대응하는 온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**3.3 두께(내용 없음)****3.4 구조 및 치수**

실린더캐비닛은 그 실린더캐비닛의 안전성·편리성 및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**3.4.1 구조**

**3.4.1.1** 실린더캐비닛은 그 내부의 누출된 가스를 항상 제독설비 등으로 이송할 수 있고 내부압력이 외부압력보다 항상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.

**3.4.1.2** 실린더캐비닛 안의 설비 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안전율이 4이상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다.

**3.4.1.3** 실린더캐비닛은 그 내부의 배관접속부 및 기기류를 용이하게 점검·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.

**3.4.1.4** 실린더캐비닛 내부의 충전용기 또는 배관에는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한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한다.

**3.4.1.5** 실린더캐비닛은 그 내부 충전용기의 전도(轉倒) 등으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체인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.

**3.4.1.6** 실린더캐비닛은 그 내부의 배관에 가스의 종류와 유체의 흐름방향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.

**3.4.1.7** 실린더캐비닛은 그 내부의 밸브에 개폐방향과 개폐상태가 표시된 것으로 한다.

**3.4.1.8** 실린더캐비닛에 사용하는 가스는 상호반응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.

**3.4.1.9** 가연성가스 용기를 넣는 실린더캐비닛은 당해 실린더캐비닛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가 된 것으로 한다.

**3.4.2 치수(내용 없음)**

### 3.5 가공

실린더캐비닛 안의 배관계는 그 배관계의 기계적 강도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가공한다.

**3.5.1** 튜브를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이 매끄럽고 부스러기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며, 절단 후에는 압축공기 등으로 깨끗하게 세정한다.

**3.5.2** 고압부의 튜브를 굽힘 가공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응력집중부가 생기지 않도록 굽힘 곡률반지름을 튜브 호칭지름의 4배 이상으로 한다.

### 3.6 용접

실린더캐비닛의 배관계는 그 배관계 이음매의 기계적 강도와 기밀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용접한다.

**3.6.1** 용접작업은 검증된 용접시공절차서(WPS)에 따라 수행한다.

**3.6.2** 용접원은 용접시공절차서에 따라 용접능력을 검증 받은 자로 한다.

**3.6.3** 용접에 사용하는 자동용접기는 매일 용접작업 전에 점검하여 동일한 용접품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한다.

**3.6.4** 용접부는 용입불량이나, 언더컷, 오버랩, 균열 등 사용상 지장을 주는 결함이 없도록 한다.

**3.6.5** 용접 비이드의 폭은 튜브 두께의 3 배 이하로 하고, 비이드 높이는 튜브 두께의 10 %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**3.6.6** 용접 비이드는 직진성을 유지하고, 엇갈림 오차는 0.15 mm 또는 튜브 두께의 10 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### 3.7 열처리(내용 없음)

### 3.8 성능

실린더캐비닛은 그 실린더캐비닛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.

### 3.8.1 제품성능 <개정 09.5.15>

#### 3.8.1.1 내압성능

배관계에 대하여 질소나 공기 등 기체로 상용압력의 1.1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팽창과 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# 3.8.1.2 기밀성능

배관계에 대하여 배관 내부를 1 Pa 이하의 진공을 유지하고 배관 외부에서 헬륨을 분사하고, 헬륨검지기를 이용하여 배관계 내부에서 검출되는 헬륨의 양이  $1.013 \times 10^{-4}$  Pa mL/sec 이하가 되는 것으로 한다.

#### 3.8.1.3 용접성능

같은 날 동일 조건으로 용접한 동일 형식의 튜브를 각각 1개씩 채취하여 당해 튜브 용접부 단면에 대해 배울 10배 이상의 확대경을 사용한 매크로시험(Macro Test)을 실시하여 3.6.4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 3.8.2 재료성능(내용 없음)

### 3.8.3 작동성능(내용 없음)

## 3.9 표시

### 3.9.1 제품표시

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라 실린더캐비닛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그 실린더캐비닛의 몸통부분 등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각인하거나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이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. <개정 09.5.15>

- (1)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
- (2) 사용하는 가스 명칭
- (3)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
- (4) 최고사용압력(기호 : DP, 단위 : MPa)
- (5)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

### 3.9.2 합격표시

규칙 별표 25 제1호에 따라 그림 3.9.2와 같이 'K' 자의 각인을 한다. <개정 09.5.15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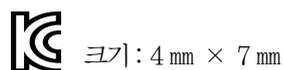


그림 3.9.2 합격표시

## 4. 검사기준

### 4.1 검사종류

실린더캐비닛의 검사는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로 구분한다.

#### 4.1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

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실린더캐비닛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 실시한다.

#### 4.1.2 제품에 대한 검사

실린더캐비닛이 제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다음과 같다.

##### 4.1.2.1 설계단계검사(내용 없음)

##### 4.1.2.2 생산단계검사

실린더캐비닛이 제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한다.

## 4.2 공정검사 대상 심사(내용 없음)

### 4.3 검사항목

#### 4.3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

실린더캐비닛 제조자가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조시설의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2.1에 따른 제조설비 적합 여부
- (2) 2.2에 따른 검사설비 적합 여부

#### 4.3.2 제품에 대한 검사

##### 4.3.2.1 설계단계검사(내용 없음)

##### 4.3.2.2 생산단계검사

실린더캐비닛이 제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생산단계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.

##### 4.3.2.2.1 제품확인검사 <개정 09.5.15>

- (1) 4.4.2.2.1(2-1)에 따른 재료검사
- (2) 4.4.2.2.1(2-2)에 따른 구조 및 치수 검사
- (3) 4.4.2.2.1(2-3)에 따른 가공검사
- (4) 4.4.2.2.1(2-4)에 따른 용접검사
- (5) 4.4.2.2.1(2-5)에 따른 성능검사
- (6) 4.4.2.2.1(2-6)에 따른 표시검사

## 4.4 검사방법

### 4.4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

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2.1에 따른 제조설비 및 2.2에 따른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설비를 모두 구비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### 4.4.2 제품에 대한 검사

제품에 대한 검사는 실린더케비닛이 검사항목별 제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검사방법으로 실시한다.

#### 4.4.2.1 설계단계검사(내용 없음)

#### 4.4.2.2 생산단계검사

##### 4.4.2.2.1 제품확인검사

###### (1) 샘플링(내용 없음)

###### (2) 검사요령 <개정 09.5.15>

###### (2-1) 재료검사

재료검사는 3.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.

###### (2-2) 구조 및 치수 검사

구조 및 치수 검사는 3.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.

###### (2-3) 가공검사

가공검사는 3.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.

###### (2-4) 용접검사

용접검사는 3.6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.

###### (2-5) 성능검사

성능검사는 3.8에 따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.

###### (2-6) 표시검사

제품표시, 합격표시 등은 3.9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.

(3) 합부판정 <개정 09.5.15>

실린더캐비닛이 (2)의 모든 검사항목에 적합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## 4.5 그 밖의 검사기준

### 4.5.1 수입품 검사(내용 없음)

### 4.5.2 검사일부 생략(내용 없음)

### 4.5.3 불합격 제품 파기방법

규칙 별표 23제1호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실린더캐비닛은 다음 기준에 따라 파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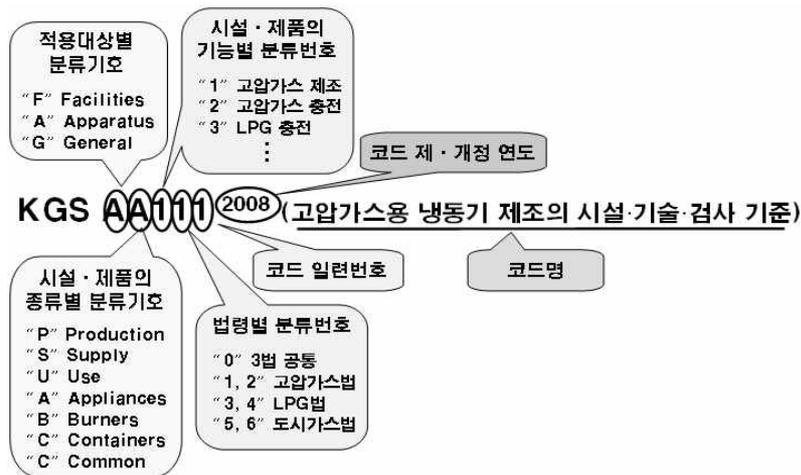
4.5.3.1 불합격 된 실린더캐비닛에 대해서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복원할 수 없도록 한다.

4.5.3.2 파기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에서 검사원 입회하에 실린더캐비닛 제조자가 실시한다.



## 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

KGS(Korea Gas Safety)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·기술·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.



| 분 류                  | 기 호                   | 시 설 구 분            | 분 류                   | 기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 설 구 분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제품(A)<br>(Apparatus) | 기구(A)<br>(Appliances) | AA1xx              | 시설(F)<br>(Facilities) | 제조·충전<br>(P)<br>(Production) | FP1xx        | 고압가스 제조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2xx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2xx        | 고압가스 충전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3xx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3xx        | LP가스 충전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4xx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4xx        | 도시가스 도매 제조시설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5xx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5xx        | 도시가스 일반 제조시설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6xx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판매·공급<br>(S)<br>(Supply)     | FS1xx        | 고압가스 판매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9xx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2xx        | LP가스 판매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연소기(B)<br>(Burners)   | AB1xx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3xx        | LP가스 집단공급시설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2xx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4xx        | 도시가스 도매 공급시설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3xx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FS5xx                        | 도시가스 일반 공급시설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9xx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저장·사용<br>(U)<br>(Use)        | FU1xx        | 고압가스 저장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용기(C)<br>(Containers) | AC1xx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2xx        | 고압가스 사용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C2xx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3xx        | LP가스 저장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C3xx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4xx        | LP가스 사용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C4xx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5xx        | 도시가스 사용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AC9xx                 | 일반(G)<br>(General) |                       | 공통(C)<br>(Common)            | GC1xx        | 기본사항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AC9xx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GC2xx        | 공통사항         |



---

## 가 스 기 술 기 준

---

KGS AA913 <sup>2009</sup>

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

---

2009년 5월 29일 발행

- 발 행 인: 박 환 규
  - 발 행 처: 한국가스안전공사  
우편번호 429-712  
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32-1  
TEL : (031) 310 - 1315  
FAX : (031) 314 - 8189
- 

KGS Code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(☎031-310-1311~7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